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3. 19.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4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

으로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1.5%), 31건(5.3%)이 감소

○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 전년 대비 건설업 감소, 제조·기타업 증가

▲ 건설업 276명(272건)으로 27명(8.9%), 25건(8.4%) 감소

▲ 제조업 175명(146건)으로 5명(2.9%) 증가, 19건(11.5%) 감소

▲ 기타 138명(135건)으로 13명(10.4%), 13건(10.7%) 증가

○ (규모별) 전년 대비 50인(역) 미만은 감소, 50인(역) 이상은 증가

□ 경기 여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정책, 현장의 안전 경각심·의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년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취약업종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 제고 필요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하여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의 취약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음

○ 또한,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확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확대·지원(33,500개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595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3월 12일(수)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14.(금)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25.(화)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 ▲(화재·폭발)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붕괴)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작업지휘자 지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안전성 검토 등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야간작업 사업장·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 및 수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의 개정(‘25.1.1. 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 및 잘못 기재된 내용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

1) ‘18년부터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한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경우, 일반검진기관 중 교육이수 등 요건 충족 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수검 가능

- 업무(지정)지역 제한으로 근거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음에도 장거리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 발생

2)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를 추가

나. 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등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의 개정(‘25.1.1. 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단에 송부하는 건강진단 전산입력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

다. 어려운 용어 및 오기 등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잘못 기재된 내용 정비

라.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760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300901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2/6, 경남 거제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중 떨어짐
 [2/24, 경북 상주시] 해체 작업 중 떨어짐
 [2/26, 서울 종로구] 사다리에서 떨어짐
 [3/1, 경남 거창군] 지붕이 무너지면서 깔림
 [3/4, 대구 달서구] 과다 적재된 자재가 프레스에 의해 튕겨 맞음
 [3/4, 서울 성북구]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떨어짐
 [3/8, 전남 영암군] 차량과 벽체 사이에 끼임
 [3/8, 서울 관악구] 비계 사이 개구부로 떨어짐
 [3/10, 경기 평택시] 갯품으로부터 떨어짐
 [3/10, 강원 강릉시] 달비계에서 떨어짐
 [3/11, 서울 동대문구] 떨어진 자재에 깔림
 [3/12, 경기 포천시] 고소작업대 위 사다리에서 떨어짐
 [3/13, 경기 화성시] 사다리에서 떨어짐
 [3/13, 경북 경산시] 인양 중인 화물에 맞음
 [3/14, 충남 서산시] 집게차에 끼임
 [3/14, 충북 청주시] 향타기 장치에 맞음

'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 설비 지원 사업 연장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을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5. 3. 7.(금) ~ 3. 2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안서** 등
- 접수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접수처별 담당자 정보 참고
- ※ 대표번호: 1644-8845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455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안내

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희망 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4년도 석면 안전성평가 A~C 등급 업체**
- * 단, 2024.3.1.~2025.2.28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25.3.28.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제출처 :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 실 보건사업부) 또는 팩스(052-702-9507)
- * 일반우편의 경우 3.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평가기간 : 2025.4.18.~2023.10.31.
-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1~2인) 진행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467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3월 4일부터 중소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하고,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24년 26,500개소→'25년 33,500개소) 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한다.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경기·경남), 선박건조및수리업(부산·경남),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경기·인천),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경기)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업종* 사업장 2회를 실시하고, 본사와 현장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건설업은 총 7회(본사 3회, 현장 4회)를 실시한다.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실제 사고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자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경총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53%)정도만 중처법 준수를 완료했다고 응답함

*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실태조사('24.2.19)

□ 또한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를 많이 꼽는다.

□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규정 중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이 갖추거나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목차로는 ①조직과 시스템, ②안전보건교육, ③위험성평가, ④3대사고 예방수칙, ⑤사고발생 후 절차로 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의무별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점검사항을 수록했으며, 법원의 중처법 주요 판례(유죄, 무죄)도 소개하였다.

□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업체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산업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afplaza.com/web/pages/gc/79582b.do?mmid=gc/79582b&ssbuid=0001&ntid=18778&bsfFlag=View&pageIndex=1&searchCnd=0&searchWrd=>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4539&article.offset=0&articleLimit=10>